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관련 법적근거 마련〉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8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
3. 회부연월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립학교·공립학교의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보수나 복무에 있어서는 국립학교·공립학교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신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무직원의 보수·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립학교·공립학교의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도 제외¹⁾되어 있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일례로 육아휴직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사립학교법」, 「고용보험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현행법 제70조의2에 따라 각 사립학교의 정관에서 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각 사립학교 정관에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반해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1)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근거 규정]

구분	사립	국·공립
	육아휴직	
교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사무직원	각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국가공무원법」 제71조(국립)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공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 휴직과 관련하여서도 국·공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휴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과 같이 개별법에서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을 규정한 경우 휴직이 가능함.

이에 반해,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같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인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9조2)에 따라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혹은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음.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휴직 근거 규정]

구분	사립		국·공립	
	육아휴직	돌봄휴직	육아휴직	돌봄휴직
교원	「사립학교법」 제59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사무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국립) 「지방공무원법」 제63조(공립)	

□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공립학교 사무직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과는 기간과 수당 지급 면에서 차이가 있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2)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국·공립학교 사무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육아휴직 비교]

구분	국·공립학교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 교원	사무직원
기간	<u>3년</u>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가능	<u>1년</u> 이내(+6개월)
육아 휴직 수당	휴직 0~3개월 : 250만원 휴직 4~6개월 : 200만원 휴직 7개월 이후 : 160만원	각 사립학교 정관 외에 근거 규정 없음

□ 이에 개정안은 보수 및 복무 등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공립학교 사무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제안된 것임.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또한 교육활동의 지원이라는 공적인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현재 사립학교와 사무직원의 복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으며,³⁾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입법취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또한, 의무 또는 무상교육에 따른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등을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⁴⁾와 같은 보조금의 형태로 교부받고 있는데 반해, 사립유치원 및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에 대한 보수 및 휴직수당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 유형별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재원 현황]

구분	교원		직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유	국고(국립), 보통교부금(공립)	보통교부금, 자체 재원	국고(국립), 보통교부금(공립)	자체 재원 (원비 등)
초		보통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자체 재원		보통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자체 재원
중				
고				
고등 교육 기관	국고(국립), 지방재정(공립)	자체 재원 (등록금, 기부금 등)	국고(국립), 지방재정(공립)	자체 재원 (등록금, 기부금 등)

자료:교육부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및 사립대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에 대해 국립학교·공립학교의 사무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에 대한 수당 등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의 부담을 둘러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4)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편, 사립대학 및 사립유치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사립학교 경영자의 자율권 침해와 재정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⁵⁾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자립에 따른 학교 경영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사무직원과 동일하게 모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참고 1> 관계기관 의견

참고 1

관계기관 의견

○ 유치원

- (사단법인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가가 임용하고 공공재정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국·공립학교 직원과 달리, 개별 사립학교의 보수 수준, 복무 조건, 신분보장 범위를 전제로 **사적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등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정안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보수 및 근무조건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성음유치원 등) 사립유치원의 법적·재정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 적용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과도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 시도교육청

- (대구교육청)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사립유·초, 자사고 등)까지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수업료 인상으로 학부모 부담 가중 우려
-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유리한 사항 선택적 요구 등) 방지

○ 대학교

- (학교법인 삼육학원) 국가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는 기관에 동일한 보수 기준을 강제할 경우, 재정 악화·교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영산대학교, 국제예술대, 부산디지털대, 부천대, 진주보건대) 사립대학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부담 가중 우려
- (경북전문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 보수·복무 전반이 모두 포함할 여지가 있어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동등한 처우” 개념이 모호하고,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운영 독립성 침해 위험
- (연세대) 사립학교 정관에서 사무직원의 보수·복무를 국·공립학교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공립학교의 수준에 맞추어 처우를 하향시켜야 한다는 해석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